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국군포로송환법)」
시행령 상 ‘본적’ 용어를 현행 「가족관계등록법」에 맞게 정비하고,
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편,

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
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, 간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령 용어 정비(시행령안 제3조 제7항)

- 1) 여성가족부 「특정성별영향평가」시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내
성차별적 용어인 ‘본적’에 대한 정비 및 변경 권고(‘24.10월)
- 2) 동법 시행령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‘본적’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
용어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‘등록기준지’로 변경 필요

나. 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(시행령안 제9조 제2항)

- 1)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
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
- 2)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‘연장자 순’에서 ‘순위가 같

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’로 변경

다. 유족지원금 권리승계 내용 신설(시행령안 제9조 제4항, 제7항)

- 1) 현행 규정은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행방불명 시 차순위자에 대해서만 권리승계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등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의 행방불명시 권리승계 내용이 부재하며, 사망 등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권리상실 시 권리승계 조항 부재
- 2)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행방불명 시 같은 순위자의 권리승계 및 권리상실 시 차순위자 및 같은 순위자에 대한 권리승계 조항 신설 필요

라. 진료행위 범위 확대(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)

- 1)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‘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’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, 가정간호, 노인요양기관(요양원)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규정
- 2)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~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*에 대한 비용도 포함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(평균 94세)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요

* △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, △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, △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, △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, △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
마. 보장구 구입비 지급요건 규정(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3호)

- 1) 현행 규정은 보장구 구입비의 지급요건에 대해 미규정
- 2)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보장구 구입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 규정 필요

바. 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(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)

- 1) 귀환포로의 고령화(평균 연령 94세)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
- 2) 시행령 제13조(의료지원)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의료지원 한도액 변경 없음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항 중 “본적”을 “등록기준지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”를 “수 있으며,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미성년자인 자녀,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⑦ 유족지원금을 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며,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비용”을 “비용(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인체”를 “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, 인체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,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간경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진료비용 적용례)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진료비 중 「의료법」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진료비용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(간병비 적용례)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 의한 간병비는 이 영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 간병에 대해 적용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등록신청 및 결정) ① ~ ⑥ (생 략)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<u>본적</u> , 가 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 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·비치 하여야 한다.	제3조(등록신청 및 결정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----- ----- <u>등록기준</u> <u>지</u> ----- ----- -----.
제9조(유족지원금의 지급) ① (생 략)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. 1. (생 략) 2. <u>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</u> <u>순</u> ③ (생 략)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 인 경우에는 차순위자(次順位 者)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 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 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.	제9조(유족지원금의 지급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미성년자인 자녀, 이 경우 순</u> <u>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</u> <u>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수 있으며, 같은 순위자가</u> <u>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</u>

⑤・⑥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의료지원) ① (생략)

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고의로 질병,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

2. (생략)

3.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

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---.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유족지원금을 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며,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.

제13조(의료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.

-----.

1. -----
----- 비용(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) -----
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

교정하는 보장구(補裝具)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<신 설> ③・④ (생 략)	<u>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, 인체-----</u> -- 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 <u>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,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</u> ③・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257